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23 선고 2014가합594494 판결 [주식 매매대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11. 20.

판결 선고 2015. 12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, 피고 및 C는 2008. 6. 13. "카메룬 법인 D, E, F(실제로는 F, 이하 'F'이라한다), 한국 법인 주식회사 G(이하 'G'이라 한다), 주식회사 H(이하 'H'이라 한다) 및 F의 한국법인이 설립될 경우 그 법인(실제 2008. 8. 22. '주식회사 I' 설립, 이하 'T'라 한다)"(이하, '이 사건 6개 법인'이라 한다)을 통하여 카메룬에서 광산개발 사업(이하 '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'이라 한다)을 진행하되, 그 지분비율을 원고 49%, 피고 및 C 각 25.5%로 정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협약(이하 '이 사건 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, 피고 및 C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6개 법인의 대표이사, 이사, 감사 등으로 재직하며 공동으로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.

다. 양도인 I, F(이하 '이 사건 각 회사'라 한다)과 양수인 J 사이에서 2008. 12. 16. 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계약일자 현재 이 사건 각 회사의 총 주식 수의 1%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대금 1억 5,000만 원(F 주식 양도대금 1억 4,950만 원 + I 주식 양도대금 50만 원)에 양도하되, 그 양도대금은 피고의 제일은행 계좌(계좌번호: K)로 지급하기로 하고,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계약을 보증하며, 이에 대한 절차 및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 양도조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J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.

라. 양도인 이 사건 각 회사와 양수인 L 사이에서 2009. 2. 5. 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위 다.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양도조건, 보증 등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양수계약서[다만, 양도대금은 피고의 제일은행 계좌(계좌번호: M, 이하 위 계좌 및 위 다.항 기재 피고의 계좌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피고 계좌'라 한다)로 지급하기로 함]가 작성되었다(이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위 다.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'라 한다).

마. J은 2008. 12. 16.부터 2008. 12. 17.까지 합계 1억 5,000만 원을, L는 위 라. 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09. 2. 3.부터 2009. 3. 27.까지 합계 1억 5,000만 원을 각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[이하 위 송금액 합계 3억 원(J 송금액 1억 5,000만 원 + L 송금액 1억 5,000만 원)을 '이 사건 송금액 3억 원'이라 한다],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을 G, H으로 송금하였다.

바. J, L는 2009년경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중 1%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2, 3호증의 각 1, 2, 제4호증, 제6호증의 2, 제8, 11호증, 제16호증의 1, 2, 제20, 21호증의 각 기재, 을 제1호증, 제2호증의 2,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J, L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회사 주식 중 당시 발행주식 수의 1%에 해당하는 주식을 J·L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은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었으며,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을 수령한 것이다.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은 원고 개인과 J·L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, J·L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J·L가 각 'N 그룹'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 사건 6개 법인을 통한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중 당시 발행주식수의 1%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자절차를 거쳐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 당시 이 사건 6개 법인의 자금관리계좌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이다. 이후 J·L는 증자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회사의 1%에 해당하는 지분을 얻었고,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을 받아 G, H에 송금하여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 자금으로 집행하였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에 관하여 원고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판단

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

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, 사실확인서(갑 제5, 6호증의 각 1)의 각 기재 및 증인 L, J의 각 증언 등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이 원고 개인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①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개인 소유의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도 양도인이 원고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,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회사로 되어 있고, 그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.

②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·운영된회사이고,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G, H도 이 사건 각 회사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된 회사이며, 그 실질적인 운영주체도 원고, 피고, C로 동일하다.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각 회사와 G, H이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사와 관련되어 유입된 자금이 G, H으로 귀속되어 사용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,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위돈을 사용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(한편, 원고는 G, H은 이 사건 각 회사와 다른 광산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서로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협약의 내용, 등기임원의 인적구성, 이 사건 각 회사 및 G, H이 개발하던 광산들은 모두 원고가 탐사권을 획득하고 있었던 광산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사및 G, H은 모두 원고, 피고, C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카메룬 광산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·운영된 법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).

③ J·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그 자리에 피고도 동석하였으며, 당시 원고의 신용사정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,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(갑 제5, 6호증의 각 1)도 제출하였다.

그렇지만, J·L는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로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, 나 J의 경우 이 법정에서 'L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무를 위임하였고, 원고 또는 피고와 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'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, 자신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과정에 피고가 동석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한 점, 타 L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2. 7. 19., 2012. 8. 6., 2013. 4.2. 각 피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'자신은 원고로부터 현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1억 5,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 5,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%를 받기로 한 것'이라거나(을 제19호증의 2), 'O인지 N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1억 5,000만 원을 N에 넣었으며, 자신은 돈을 I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, 피고 명의 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기억은 없다'거나(을 제19호증의 3), '자신은 투자 당시 2,000만원 정도 밖에 없었는데, 원고가 원고의 지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줘서 1차 5,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뒤 1억을 만들어 최종 1억 5,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'(을 제19호증의 1)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앞서 본 자신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말을 하였는데, 별다른 제약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와 L 사이에 이루어진 위 대화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앞서 본 J·L의 각 증언 및 사실확인서(갑 제5, 6호증의 각 1)의 각 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.

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개인과 J·L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, J·L와의 연락에 별다른 지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는 대가 지급 무렵 대가 지급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키거나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 시도하였을 것이므로, 이를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는 피고와 그 무렵부터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의 송금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이르기까지 약 5 내지 6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.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송금액 3억 원이 이 사건 카메론 광산개발 사업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각

피고 계좌로 입금되어 필요한 용처에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종택, 판사 하상익, 판사 김동현